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8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3. 2. 10.	회 부 일	2023. 2. 13.

1. 제안이유

- 가.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·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함으로써
- 나.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는 판매를 증대시키고,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육군병장” 상표 추가 (안 별표1)
- 나. 논산시 공동상표의 약칭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기존 : “논산시 공동상표” (이하 “에스민상표” 라 한다)
 - 변경 : 논산시 공동상표 “에스민 상표 및 육군병장 상표” (이하 “공동상표” 라 한다)

3. 검토의견

- 가.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·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함으로써 판매를 증대시키고,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, 제21조, 제4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